

경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8-2호

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(우본고시 제2017-54호)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우체국 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2월 19일

경 인 지 방 우 정 청 장

1. 고시내용 :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우체국 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

2. 대상국 : 5국

총괄국	대상국	관서급	위 치	점심 휴무시간
남양주	경기조안	6급	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499번길 4	12:00 ~ 13:00
화 성	장 안	별정국	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기아자동차로 748	
강 화	내 가	별정국	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강화서로 217-8	
포 천	포천이동	별정국	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화동로 2058-5	
	포천영중	별정국	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로6길 6	

3. 시행일 : 2018. 3. 2. (금)

4. 존속기간 : 이 고시는 점심시간 휴무 해제 시까지 유효